

의안번호	제137호
의결 연월일	2019년 월 일 (제 회)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9년 2월 26일

#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7
----------	-----

제출연월일 : 2019. 2. 2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법인, 기관, 비영리 단체 기관 등
- 사업대상 : 충북 도내 초·중·고등학교
- 위탁범위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협동조합교육 지원 전반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10개월 (2019. 3월~2019. 12월)
- 위탁사업자선정방법 :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 : 20,000천원(자체예산 100%) \* 연도별 변동
- 위탁주요사무
  - 충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 관리·감독 및 사후 지원
  - 학교협동조합 설립 One-Stop 서비스 지원
  - 학교협동조합 네트워크 및 알리미 육성 교육 지원
  - 학교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및 포럼 지원
  - 학교협동조합 연계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 3. 참고사항

○ 위탁현황

- 2018. 6. ~ 2018. 12. / 사회적기업 (사) 사람과 경제

○ 붙임

-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 관계법령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 관련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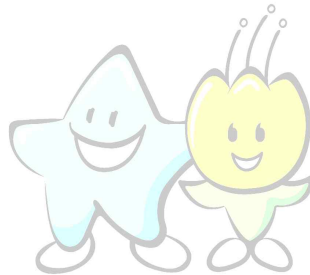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26(2018.8.13.))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하여  
현장적합성 있는 지원 추진

---

#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학교자치과]**

# [학교협동조합활성화 운영 체제]

<b>비전</b>	교육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b>목표</b>	미래학력 핵심역량을 갖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
<b>추진 전략</b>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강화
	학교 안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역량강화
	학교협동조합 협력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감성능력 역량강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정책 지원 체제 구축**

학교협동조합 지원 협력 강화

행복교육지구 연계 운영

학교협동조합 성과관리 체계화

#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 1 추진 배경

### ○ 학교구성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구현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민주시민 교육 구현

### ○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협동교육 강화

어울림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으로 학교와 마을간 넘나들기를 통하여 교육적 연대와 협력적 교육문화 실현

### ○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경제원리 체득

### ○ 지역공동체 형성과 시민의식 함양

교육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교육복지 실현과 공동체 지속성 유지

## 2 추진 근거

가. 제17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 1-1-4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 2019년 주요업무계획(1-2-2. 교육협동조합 운영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26(2018.8.13.))

### 3 사업의 목적

- 가.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할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전담 조직 설치·운영을 통해 현장관리 및 설립·운영 지원 추진
- 나. 학교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운영 컨설팅, 재정지원 등 현장중심의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공교육 중심의 “학교협동조합 실천 모델 확산”
- 다. 행정, 유관기관, 교육계, 전문가, NGO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 운영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4 기본 개념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교 안에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5 세부 계획

- 가. 목 적: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관리·감독을 수행할 충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전담 조직 설치·운영을 통해 현장관리 및 설립·운영 One-Stop 서비스 지원
- 나. 사 업 명: 2019.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모 사업
- 다. 기 간: 2019. 12월까지
- 라. 추진방법: 충북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제안·공모

마. 공모대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기관, 비영리 단체 기관

바. 추진주체: 충청북도교육청

사. 주요내용

- 1) 충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 2) 학교협동조합 설립·관리·감독 및 사후 지원
- 3) 학교협동조합 설립 One-Stop 서비스 지원
- 4) 학교협동조합 네트워크 및 알리미 육성 교육 지원
- 5) 학교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및 포럼 지원
- 6) 학교협동조합 연계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7)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아. 사업비: 20,000,000원(이천만원)

자. 사업효과

- 1) 충북교육지표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달성
- 2)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제 원리 및 삶과 연계한 경제의 흐름 이해를 통한 삶에 기반 한 생생한 경제교육 강화